

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1999. 12. 2 평창군수(자치행정과장)
- 나. 회부일자 : 1999. 12. 20
- 다. 상정일자 : 제73회 평창군의회(정기회) 제1차조례특위('99.12.21)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과장 이경식)

가. 제 안 이 유

-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실장 또는 비서등에 대하여는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기 위함.

나. 주 요 내 용

- “공무원중 읍면장을 제외한 지방별정직 공무원”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개정(안 제2조 제1항)
- “소속기관의 장”을 “그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의 사무과장“으로 개정
- “단위기간내에서 전보”를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로 한다라 개정(안 제7조)

- “근무사항 연령” 본문에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의 비서실장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허해성)

- 본 조례안은 현행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에서 선거직이 필요에 따라 임기기간중 임명하는 비서실장 및 비서의 별정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하는 있는 상한 연령을 따르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단서의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상 명시된 별정직 공무원에서 없어진 별정직 읍면장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기관의 조례개정과 표준안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별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요지	답변요지
○ 본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 선거직 자치단체장이 원할 경우 비서를 채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며, 정책적으로 준칙안이 내려온 것임.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붙 임 : 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부